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통장출금 및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개　　정 2010.03.02
일부개정 2015.04.16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와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에 CD·ATM기(이하 "자동화기기"라 한다)를 이용한 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성립) 이용자가 서비스를 지정하여 금고가 정한 「통장출금 및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자동화기기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고 금고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서비스 이용기기) 금고가 설치, 운영중인 자동화기기로 한다.

제4조(서비스의 종류) 금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통장을 이용한 거래 : 통장을 이용한 예금의 출금 및 이체거래
2. 무통장/무카드 거래 : 카드 및 통장없이 계좌비밀번호와 거래비밀번호(승인번호)를 이용한 예금입출금 및 이체거래

제5조(거래대상 예금)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 예금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온라인보통예탁금, 온라인자립예탁금, 자신만만자유예탁금 중 이용자가 신청한 계좌로 한다. 다만, 거래대상 예금이 추가되거나 예금상품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확인사항) 금고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일치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외의 사항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

1. 통장을 이용한 거래 :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 거래비밀번호(통장출금 승인번호)
2. 무통장/무카드 거래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 거래비밀번호(무매체 승인번호)

제7조(이용시간) 이용자는 금고가 정한 시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고는 전산시스템 운영 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예금출금 및 이체한도) ①자동화기기에 의한 1회 출금한도(이체금액 포함) 및 1일 출금한도(이체금액 포함)는 금고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최근 1년간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자동화기기 한도(현금인출·이체한도)는 1회 및 1일 70만원으로 하향조정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이체한도가 조정된 고객이 이를 상향조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에 방문하여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1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1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될 수 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9조(이용수수료) ①이용수수료는 금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용수수료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7일전에 금고 사무소 등에 게시하여 1월간 알린다.

②이용수수료는 서비스 이용시마다 이용자의 출금 계좌에서 자동징수 한다.

제10조(서비스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1. 연속하여 3회 계좌비밀번호 및 거래비밀번호가 오류인 경우
2. 출금계좌의 인출가능액이 출금 또는 이체할 금액과 이용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3. 1회 또는 1일 예금출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4. 당일중에 잔액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5. 통장을 이용한 거래신청계좌의 통장분실 신고가 접수된 경우
6. 무통장/무카드 거래신청계좌에 사고신고가 접수된 경우
7. 법적 지급제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
8.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금고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거래비밀번호 등의 관리) ①이용자는 거래 안전과 비밀보호를 위하여 신청일에 통장출금 및 무통장/무카드 거래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시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이용자는 통장출금 및 무통장/무카드 거래비밀번호를 조회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거래비밀번호를 잊어 버리거나 연속해서 3회 오류 입력한 때에는 금고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사용 신청을 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정지, 해지, 변경, 사고신고) ①삭제<2012.06.04>

②이용자가 거래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서면으로 금고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용자의 서비스 신청내용 변경은 금고가 정한 신청서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④이용자는 통장분실·도난, 비밀번호 누설 등 사고발생 시에는 즉시 금고에 서면 또는 통신매체, 전화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이용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본인이 금고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면책사항)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금고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절차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2. 이용자가 통장 및 계좌비밀번호와 거래비밀번호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통장의 위·변조 등이 있을 경우에 자동화기기로 위·변조 확인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또는 통신장애,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제14조(준용규정 및 약관변경) ①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한다.

②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금고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고, 그 기간내에 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03.02>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약관 거래 고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약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은 종전의 약관 거래 고객에도 적용한다.

부　칙 <2012.06.04>

이 약관은 2012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4.16>

이 약관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등록No. : 34-03　재질 : NCR지
인색 : 별색2도　면수 : 양면
규격 : 210×297㎜ (2015.04.16 개정)

MG새마을금고중앙회 제정